

의안번호	제681호
의결 연월일	2024년 9월 일 (제 회)
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
결의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2일
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68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2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‘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
나. 동 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의 종합적 검토 및 다각적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다.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, 국제선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, 공항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, 전략적 홍보 강화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및 지원을 한다.

라.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되, 필요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마.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수요 회복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대 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등 여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공항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함.

나.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, 공항 기반 시설 확충, 국제선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, 전략적 홍보 강화, 빈시간 슬롯(Slot)*의 활용도 제고, 공항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, 화물수요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.

* 특정날짜 및 시각에 항공기 이·착륙 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

다. 또한, 청주국제공항 현황과 이용권역, 항공노선·공항시설 등 청주국제공항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제2항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, 제38조, 제39조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제35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3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- 제39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)**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
-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.
-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.
-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-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